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황숙희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○ 지금까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관(官)주도 및 학교형 놀이터로서 정형화되어 어린이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.

○ 어린이, 지역주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, 지역주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놀이터로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공원, 「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 중 어린이 놀이 공간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로 함(안 제2조)

○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, 지역주민,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필요한 경우 법인·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○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 디자인, 주민참여 교육,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7인 이내의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, 자문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○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,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

○ 예산조치 : 2019년도 당초예산 반영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기간 : 2018. 11. 19 ~ 2018. 11. 21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및 협력 방안,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·운영, 재정지원, 사업 평가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